

해양수산부 훈령 제553호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항만법」개정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한 신기술 활용 촉진 및 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법」전부 개정(2020.7.30. 시행)에 따라 동 업무처리지침에 근거
법령 반영(제1조)

-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신설 관련근거 반영

나. 신기술 개발 지원,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제도
시행근거 마련

- 신기술 관련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열린 해양기술
마당) 개설(제2조 제6호, 제7조의2)
- 신기술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일정규모(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시험시공 지원 검토 의무화
(제8조 제4호, 제5호)

다. 시험시공 지원사업 확대 등에 따른 설계반영 절차 정비

- 발주청에서 시험시공 지원을 확정 한 경우에 대하여 설계반영 근거 마련(제11조 제2항)
 - 시험시공 대상사업의 설계용역 착수 전에 시공실적이 발생하는 등 실증이 이루어진 신기술 등에 대하여 지원대상 제외근거 마련(제11조 제4항)
- 라. 신기술 활용 심의의 공정성 확보 및 공신력 강화를 위한 심의절차 개선(제15조,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평가방법을 정성평가(심의위원 과반수 채택)에서 정량평가(가격 40% + 기술 60%)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평가권한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하였으나 평가권한이 없는 위원회 담당국장으로 변경, 평가대상 공법을 3개에서 6개로 확대, 이에 맞게 관련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항만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을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으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열린 해양기술마당”이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관련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한 신기술 개발 지원과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열린 해양기술마당) ① ‘열린 해양기술마당’에 신기술 등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하여 신기술 등의 적용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신기술

활용도 및 시험시공(성능검증이 가능한 최소규모)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시험시공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를 받아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발주청은”을 “발주청은 제8조 제5항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등을 확정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시공 대상사업의 설계용역 착수 이전에 지원기술의 시공실적이 발생하는 등 대상기술의 실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설계용역 착수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제5조제2항 본문의 “위원장은 항만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항만기술안전과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제9조제1항”을 “제9조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u>해양수산</u>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u>항만법</u>」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u>해양수산</u> -----.</p> <p>제2조(정의)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열린 해양기술마당</u>”이란 <u>해양수산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관련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한 신기술 개발 지원과 현장에서 신기술 활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u>을 말한다.</p> <p>제7조의2(<u>열린 해양기술마당</u>) ① ‘<u>열린 해양기술마당</u>’에 신기술 등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하여 신기술 등의 적</p>

제8조(신기술 등의 시험시공 선정)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제11조(시험시공 설계반영) ① (생략)

② 발주청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설계용역업자에게 당초 계획된 사업범위 내에 시험시공 부분을 추가하여 설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

용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신기술 등의 시험시공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성능검증이 가능한 최소규모)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시험시공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를 받아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시공 설계반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제8조 제5항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등을 확정하거나 -----

-----.

<p>③ (생략)</p> <p>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u>2018년 1월 1일</u>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재검토기한) ----- ----- ----- ----- <u>2021년 1월 1일</u> ----- ----- ----- ----- ----- ----- -----</p>
--	---